

대신 배당주 증권 자투자신탁 제 4 호[주식] (펀드 코드: 77885)

| 투자 위험 등급 | | | | | |
|----------------|----------|----------------|----------|----------|----------------|
| 3 등급(다소 높은 위험) | | | | | |
| 1 | 2 | 3 | 4 | 5 | 6 |
| 매우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 다소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매우 낮은 위험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대신 배당주 증권 자투자신탁 제 4 호[주식]'의 투자 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신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I . 집합투자기구 개요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

| | | | |
|-----------|---|-----------|--------------------|
| 집합투자기구 특징 |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모투자신탁인 대신 배당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 산으로 하여 자본소득 및 이자소득을 추구하며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수익을 추구합니다. | | |
| 분류 |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 | |
| 집합투자업자 | 대신자산운용 주식회사 (☎02-769-3233) | | |
| 모집(판매)기간 |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 모집(매출) 총액 | 투자신탁의수익증권[10조좌] |
| 효력발생일 | 2017.02.24. | 존속 기간 |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
| 판매회사 | 집합투자업자(asset.daishin.com),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고 | | |

| | | |
|-----------|-------------|--------|
| 종류(Class) | A-e | C-e |
| 가입자격 | 온라인가입자 | 온라인가입자 |
| 선취판매수수료 | 납입금액의 0.25% | 없음 |
| 후취판매수수료 | 없음 | 없음 |
| 환매수수료 | | 없음 |

| 전환수수료 |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
| 보수 (연, %) | 판매 | 0.130 | 0.330 |
| | 운용 등 | 집합투자업자 : 0.500, 신탁업자 : 0.03, 일반사무관리회사 : 0.02 | |
| | 기타 | 0 | 0 |
| | 총보수 · 비용 | 0.680 | 0.880 |
| | 합성 총보수 · 비용 | 0.680 | 0.880 |
| ※ 주석사항 | | <p>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 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6.01.03 ~ 2017.01.02]</p> <p>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 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6.01.03 ~ 2017.01.02]</p> <p>주3) 모자형투자신탁의 경우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증권거래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p> <p>주4)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기타 관리비용 등 총보수 · 비용 이외에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p> <p>주5) 총보수 ·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p> <p>주6) 합성 총보수 ·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p> | |
| ※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 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참조 | | | |

| | | | |
|-------|---|---|--|
| 매입 방법 | · 15시 30분 이전: 2영업일 기준가 매입 · 15시 30분 경과 후: 3영업일 기준가 매입 | 환매 방법 | · 15시 30분 이전: 2영업일 기준가로 4영업일 지급 · 15시 30분 경과 후: 3영업일 기준가로 4영업일 지급 |
| 기준가 | 산정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공고 · 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공고 · 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 1,000 쪽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p style="color: red;">※ 펀드간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펀드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p> | |
| | 공시장소 |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asset.daishin.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 |

II. 집합투자기구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모투자신탁**인 대신 배당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자본소득 및 이자소득을 추구하며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수익을 추구합니다.

※ **비교지수 : (KOSPI X 90%) + (CD금리 X 10%)**

*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2016년 10월 24일까지의 기간 동안은 (KOSPI200 X 90%) + (CD금리 X 10%)가 비교지수로 적용되었고, 2016년 10월 25일부터 상기의 비교지수가 적용되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에 의해 수익자의 재산형성과 주택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며, 가입자격 및 세제혜택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1) 자투자신탁의 투자 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구조의 자투자신탁으로, 저평가된 배당주 및 가치주에 주로 투자하여 고수익을 추구하는 “**대신 배당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신탁재산의 90% 이상을 투자하여 자본소득 및 이자소득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및 손실이 발생합니다.

※ **비교지수 : (KOSPI X 90%) + (CD금리 X 10%)**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2016.10.25.부터 : (KOSPI X 90%) + (CD금리 X 10%)를 비교지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대신 배당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에 90% 이상 투자하는 이 투자신탁의 속성을 반영하였습니다

(2) 자투자신탁의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대부분의 자산을 모펀드에 투자하기 때문에 모펀드에 적용되는 위험관리방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모투자신탁명 | |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
|------------------------|--------|---|
| 대신 배당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 주요투자대상 | 주식에 60% 이상투자(단, 배당주에의 투자는 50% 이상) |
| | 투자목적 | 저평가된 배당주 및 가치주를 중심으로 중장기 투자, 배당주에의 투자는 50% 이상을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투자신탁으로 자본소득을 추구합니다. |
| | 주요투자전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당주 : 직전 회계연도 결산배당금 기준 배당수익률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평균 배당수익률 이상이거나 과거 3년 동안 2회이상 배당실적이 있는 주식- 높은 배당수익률, 우량한 재무구조, 안정적인 현금흐름, 배당정책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주주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 안정적인 배당소득 외에 시세차익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발굴하여 투자 |

3. 운용전문인력(2017.02.10. 현재기준)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 |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
| | |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 기구수 | 다른 운용 자산 규모 | |
| 정만성 | 1971 | 책임 운용역 (본부장) | 41개 | 3,866억 | 2000년 대신경제연구소 금융공학실 2006년 교보증권(주) 상품개발실 2007년 대신투신운용(주) 금융공학팀장 2010년 대신투신운용(주) 금융공학본부 본부장 2011년 (현)대신자산운용(주) 퀀트운용본부 본부장 |

- 주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 전문인력입니다.
 주2)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 없음
 주3)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http://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투자실적

■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기준)

(단위: %)

| 기간 | 최근 1년차 | 최근 2년차 | 최근 3년차 | 최근 4년차 | 최근 5년차 |
|-----------|-----------------------|-----------------------|-----------------------|-----------------------|-----------------------|
| | 16.02.11 ~17.02.10 | 15.02.11 ~16.02.10 | 14.02.11 ~15.02.10 | 13.02.11 ~14.02.10 | 12.02.11 ~13.02.10 |
| Class A-e | 0.86 | -5.88 | 4.66 | -0.25 | -9.52 |
| 비교지수 | 11.60 | -4.99 | -0.72 | -1.97 | -0.97 |

- 주1) 비교지수 = (KOSPI x 90%) + (CD금리 X 1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 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 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7)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 | |
|---------------|---|
| 주식가격 변동위험 | 당해 투자신탁은 주로 신탁재산을 주식에 일정 수준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90% 이상 투자함으로써 주식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대상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당해 투자신탁의 가치도 일정수준 하락하게 됩니다. |
|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시장위험 | 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는 국내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은 당해 신탁재산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신용위험 | 당해 투자신탁는 주식, 채권,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 파생상품 레버리지위험 | 주식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레버리지효과(지렛대 효과)로 인하여 파생상품 그 자체에 투자되는 금액보다도 상당히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 집합투자기구 해지 위험 | 투자가 전원이 동의한 경우, 집합투자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다음의 투자위험은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0.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모투자신탁인 대신 배당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증권(주식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하여 실제 수익률을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한 결과 실제 연환산 표준편차는 14.36%이며 이에 따라 투자위험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다소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수익자는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주식은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주식시장 하락에 따른 원본 손실 및 시장 변동성 등 관련된 투자위험을 감내할 만한 위험선호도를 가지고 있으며, 상기 위험수준을 이해하면서 본인의 투자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시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수익률의 변동성(표준편차)은 투자기간 동안 펀드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 대비하여 변동한 범위를 측정하기 위한 통계량으로써, 펀드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값이 클수록 변동성이 심하므로 위험이 크고, 값이 작을수록 위험이 작

음을 의미합니다.

- 주1)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의 분류기준에 의한 등급으로, 판매회사에서 제시하는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을 가입하시기 전에 해당 판매회사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2) 투자위험등급의 경우, 추후 매 결산 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10.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유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위험관리]

| 모투자신탁명 | |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
|------------------------|------|---|
| 대신 배당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 위험관리 | <p>1) 배당주에의 투자는 신탁재산의 50% 이상으로 합니다.</p> <p>2) 채권에의 투자는 신탁재산의 40% 이내에서 금리전망에 따라 채권만기를 고려한 적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안정적인 수익 확보에 주력하며,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국채선물옵션 및 CD금리선물을 이용하여 자산가격하락 위험에 대처합니다.</p> <p>3) 어음에의 투자는 신탁재산의 40% 이하로 투자합니다.</p> <p>4) 투자자산간 또는 투자자산내에 분산투자 및 손절매제도 시행으로 투자위험을 관리합니다</p> |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 신고)하여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III. 집합투자기구 기타정보

(1) 과세

| 과세대상 | 과세원칙 | 세율 | 과세시기 |
|------|--|-------------------------------|------------|
| 투자신탁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 | - |
| 수익자 | 원천징수 원칙 단, 개인의 경우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개인 및 일반법인 15.4% (지방소득세 포함) | 이익을 지급받는 날 |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전환절차 및 방법

- 해당내용없음

(3) 집합투자기구의 요약 재무정보

-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정보에 대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제 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등에 관한 사항 중 1. 재무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asset.daishin.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asset.daishin.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asset.daishin.com)
-